# 인공방사성핵종에 의한 내부피폭을 고려한 대기방사능 자동감시망 경보 설정치 분석

황영묵 · 신형기 · 박창수 · 이동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E-mail: s136hym@kins.re.kr

중심어 (keyword): 대기방사능, 공기부유진, 전알파, 전베타, 조기탐지, 내부피폭

## 서 론

우리나라는 국내·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사능 재해를 탐지하고 필요시 방사선 비상발령 등을 통한 방사선방호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방사능 준위의 변동추이를 감시하고 있다. 전국 58개소의 간이측정소 및 12개 지방측정소에서 방사선준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나 대기 중의 방사능농도 감시는 인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수행되고 있다[1].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개 지방측정소를 시작으로 공기부유진형태의전 알파 및 베타 방사능 물질의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대기방사능 연속감시기를 도입하고 있다.

본 연구에서는 이상준위에 대한 신속한 원인규명 및 방사선방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기방사 능 연속감시기의 경보설정치(안)를 개발하고자 한다.

## 이론 및 방법

대기방사능 연속감시기가 측정할 수 있는 알파 및 베타선은 단위거리당 에너지 전달률이 높아서 내부피 폭을 받을 경우, 특정세포에 영향을 집중시켜 인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. 따라서 국내여건에 적합하고 조기에 주민보호조치 발령이 가능한 대기방사능 자동감시망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방사성핵종의 흡입 혹은 섭취에 관한 일반인의 연간섭취한도 및 유도 공기중농도를 활용하여 경보설정치(안)를 도출하였다.

대기방사능 연속감시기의 경보치(안)를 설정하기

위하여 방사능테러에 대한 위험도가 높으며 방사능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초기에 감지하여야 하는 원자력발전소를 감시대상시설로 선택하였다. 국내 총 20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정상운전 중에 발생하는 인공방사성핵종 중, 연속감시기에서 감지할 수 있는 미립자형태의 기체폐기물은 최근 5년간('03~'07) 총 17종이 배출되었으며, <sup>58</sup>Co 및 <sup>60</sup>Co의 핵종이 가장 많이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[2]. 인공방사성핵종의 배출 빈도수 및 배출량(Bq)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핵종별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, 빈도수가 중앙값 이상인 핵종을 대상으로 정규화하였다.

대기방사능 연속감시기의 경보치(안)를 설정하기 위한 연간선량한도는 단일핵종의 피폭과 혼합핵종에 의한 2가지 영향으로 가정하였다. 단일핵종에 의한 피 폭은 1종류의 특정핵종만을 흡입한 것이기 때문에 일 반인의 법적연간선량한도인 1 mSv를 준용하였다. 한 편, 방사성핵종이 일괄적으로 배출되어 피폭을 받게 될 경우, 선량한도에 대한 핵종별 기여분을 고려하기 위하여 핵종별 가중치를 적용하였다. 또한, 가중치를 고려한 그 총합이 연간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. 특정핵종만을 흡입한 선량한도와 일괄적 으로 모든 감시핵종을 흡입한 경우로 피폭선량한도를 구분하여 가정하였기 때문에 그림 1과 같이 연간섭취 한도(ALI, Annual Limit of Intake) 및 유도공기중농 도(DAC, Derived Air Concentration)도 각각의 경우 에 대하여 산출하였다. 한편, 혼합핵종의 유도공기중 농도는 감시대상으로 선정한 모든 핵종을 일괄 흡입 한 경우이기 때문에 개별핵종에 대한 기여분을 고려

하고자 핵종별 가중치를 추가로 적용하였고, 이를 최종유도공기중농도로 정의하였다.



그림 1 대기방사능 연속감시기의 경보치(안) 유도과정 및 산출식

# 결과 및 고찰

대기방사능 연속감시기의 경보치(안)는 관심, 주의 및 경보의 3단계로 제안하고자 하며, 개별핵종에 대한 피폭상황을 가정한 단일핵종 유도공기중농도를 '관심' 단계로 설정하였다. 해당수치가 낮은 핵종일수록 그에 대한 피폭선량이 한도에 먼저 도달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<sup>60</sup>Co(=2.57 Bg/m³)를 경보치(안)로 설정하였으 며 해당핵종에 대한 발전소의 배출관리기준(7 Bg/m³) 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으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. '주의'단계는 두 종류 이상의 혼합핵종들에 대한 피폭 상황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최종유도공기중농도를 기 준으로 설정하였으며, 이들의 총합(=12.2 Bg/m³)을 경보치(안)로서 제안하고자 한다. 연속감시기는 방사 성핵종의 흡입 혹은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의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여 피폭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IAEA의 식품섭취 제 한권고(1 μSv/h)를 기준으로 '경보'단계를 설정하였다. 관심 및 주의단계의 경보설정치(안)는 연간선량한도를 근거로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식품섭취 제한권고치를 연간권고치로 환산하였으며 그 결과, 약 8.7 mSv/vr 가 도출되었다. 따라서 경보단계는 관심 및 주의단계 의 설정근거보다 약 8배 높게 설정하고자 하며, 이는 IERNet, Integrated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 oring Network)의 준위 및 근거를 참조하였을 때, 합 리적으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.

표 1은 인공베타에 대한 대기방사능 연속감시기의 경보설정치(안)에 관한 것으로,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 근하고자 유이를 기준으로 각 단계별 경보치(안)를 설 정하였다.

표 1 대기방사능 연속감시기의 경보설정치(안) 및 근거

단계	설정값(안)	설정 근거
관 심	3 Bq/m³	- 단일핵종 피폭선량한도 - <sup>©</sup> Co의 단일핵종 유도공기중농도(2.57 Bq/m³)
주 의	10 Bq/m <sup>3</sup>	<ul> <li>- 혼합핵종 선량한도</li> <li>- 핵종별 가중치</li> <li>- 최종유도공기중농도의 총합, 12.2 Bq/m³)</li> </ul>
- 경 보	80 Bq/m <sup>3</sup>	- IAEA 식품섭취 제한권고(1 μSv/h)

표 2는 국내에 도입한 대기방사능 연속감시기와 유사한 장비를 이용하여 이미 상용 중인 스위스 RADA IR의 경보설정치로서, 대기방사능 연속감시기의 경보설정치(안)와 함께 비교하였다.

표 2 스위스 RADAIR와 연속감시기 경보설정치(안)의 비교 (단위:  ${\rm Bg/m^3})$ 

국가 단계	관 심	주 의	경 보
스위스	5	30	260
한 국	3	10	80

### 결 론

방사능 사고 및 테러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능 오염사고에 대한 조기탐지가 가능한 대기방사능 연속감시기를 도입하였다. 본 감시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보설정치(안)를 3단계로 제안하였으며,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방사능농도의 편차 등을 고려한 국내 통계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며 다양한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비교·검증으로 경보설정치(안)를 개선할 예정이다.

#### 참 고 문 헌

- 1. 국내·외 방사능 연속 모니터링 기술연구, 한국원자 력안전기술원, (2007).
- 2. 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보고 서, (주)한국수력원자력, (2003~2007).